

불법 공정·부실 관리·안전 불감...기본 안지킨 '3주'

'학동 참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예견된 人災

건물 외벽강도 무시...흙더미 쏠리고 1층 바닥 붕괴 등 복합 작용 철거 원청업체 수주 50억, 재하도급서 12억으로 '단가 후려치기' 23명 입건·6명 구속...3개 업체 입찰 '지분 따먹기' 정황 확인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 당국의 부실한 감리와 형식적 감독, 안전불감증 등으로 빚어진 예견된 참사였다.

경찰이 발표한 붕괴원인 중간수사 결과는 공사 현장 곳곳에 도사린 '설마'와 '대충'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대원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붕괴원인, 원칙 무시한 공사=광주경찰청 수사 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붕괴 원인을 철거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원칙 없는 철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철거 계획서상 건물 외벽강도를 고려한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무시됐고 이러한 철거를 통해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던 건물에 여러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 임계점을 넘어 서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철거를 위해 건물 옆에 쌓아놓은 흙더미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을 꼽았다.

건물쪽에 붙어 쌓여있던 흙더미에 밀려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불안정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그대로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면서 성토물이 쏠려 붕괴되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흙더미에 뿌린 많은 양의 물도 흙더미가 쏠려 넘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과수의 건물붕괴 시뮬레이션(ELS 프로그램)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국과수는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곳곳에 드러난 불법, 부실=경찰은 붕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최상층부터 아래쪽으로 뜯어내는 철거계획서상 과정이 무시됐는데, 업체가 작업 과정에서 임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장비를 장착한 굴삭기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철거 건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쌓은 흙더미(성토제) 위에 굴삭기를 올려놓은 뒤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던 길이가 긴 특수 장비(롱 붐 암)를 장착해야 하지만, 임차 비용이 2~3배 한 짝은 장비를 사용하면서 철거 계획이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업을 한 데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가 원인으로 꼽혔다.

경찰은 일반 건축물 철거와 관련, 원청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비는 50억원 가량인 반면,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 단가가 12억원으로 대폭 깎인 사실을 확인했다. 22억원짜리 석면 철거 공사도 원도급업체도 하도급을 주면서 4억원으로 후려쳐 계약이 맺어졌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금품로비 정황도 확인했다.

감리 절차도 부실했다. 감리자는 단 한 차례도 현

장을 찾아가지 않았고 작업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자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은 청탁을 받고 감리자를 선정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과 원칙과 다른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붕괴 건물 철거 공사 관련자 23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했다.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철거업체 2곳,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자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측에 대해서는 업체측 부인에도, 불법 하도급 공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했다.

◇'설마-대충' 이라는 불감증도 드러나=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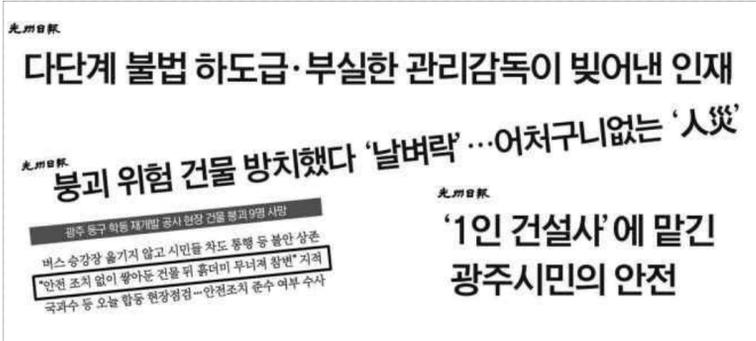
당장,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3개 업체가 각각 3-5개 업체를 갖고 입찰에 참여해 이른바 '지분 따먹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재개발 사업 석면 철거 공사에서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했지만 1개 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나눠 가져갔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광주일보가 우선 보도한 내용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 뒷편에 쌓아 올린 흙더미가 쏠리면서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 <광주일보 6월 10일 1-6면> 는 보도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 <광주일보 6월 11일 3면>, 사실상 1인 회사에게 철거를 맡긴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한 내용 <광주일보 6월 14일 1면> 등도 확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광주일보가 보도한 불법 공사, 관리·감독 부실, 안전불감증 등이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2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철거가 진행된 과정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했다.

하도급 줬으니 안전관리 책임 없다고?

40대 건설업자, 노동자 추락사고 무죄 주장에 법원 '책임 있다'

"수주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줬다. 그 사업자가 노동자를 채용했고 작업지도도 했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내가 아니다."

40대 건설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하도급을 줬으니 자신은 안전 조치 책임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맞는 말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진도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현장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데 따른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안전 난간이나 덮개,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단절된 운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 C씨가 추락해 다쳤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였다.

A씨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해당 공사를 도

급받은 뒤 하도급업자 B씨에게 도급을 줬고 그 사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지시를 한 만큼 추락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사 시작 전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했고 추락 방지용 합판도 설치했지만 B씨와 당시 추락한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서 철거한 점, 다시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도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A씨 항소를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B씨가 채용한 노동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한 점 등을 들어 원심으로 A씨가 공사현장 총괄 책임자로 안전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안전속도 5030' 효과...전남 교통사고·사망자 모두 감소

전남경찰 100일간 효과 분석 전년동기비 사망 24.8% 줄어

'안전속도 5030' 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아 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와 교통 사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과속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안전속도 5030'이 전남지역에 정착되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후 100일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사망자(74명) 대비 24.8% 감소한 63명으로 집계됐다. 보행사망자는 17% 감소(17→14명)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12.8% 감소했다.

단속 장비가 851대로 전년 대비 205대가 늘어났음에도 무인 과속단속 건수는 9.2%감소(25만 9956→23만5985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분석한 주요 도로(6개 구간) 평균

통행속도도 평균 시속 52.1km로 지난해와 비교해 1.2km 줄어 들었다.

전남청은 지난해와 올해 4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무인과속단속·통행 속도 등을 비교 분석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뽕이요' 모방 '뽕이야'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유명 과자 '뽕이요'를 연상케 하는 '뽕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업체도 원심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으로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에서 '하니 뽕이요'와 '치즈 뽕이요'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

했다. '하니 뽕이요' 앞에는 '달콤한'이란 단어를 넣기도 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하니 뽕이요', '뽕이요 치즈' 등과 흡사하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뽕이요'를 생산, 판매했으며 상표 등록도 마쳤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다.

베트남 업체는 B씨에게 '뽕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팔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의뢰받은 대로 '뽕이야'를 제조해 수출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를 신청,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업체와 B씨는



상표등록된 '뽕이요'(왼쪽)와 유사 제품.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의정부지법 교양지원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B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A업체와 B씨는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1955	1	영광군 영광읍 고촌리 506 266㎡	대	215,845,360	일괄매각,제외의
	2	영광군 영광읍 물루로5길 30-3 1층101.2㎡ 2층79.09㎡ 제외의 세택실 등 12㎡ [독상에 매각제외]비닐하우스1식소재	다가구	215,845,360	각물포함
2020타경 14954	1	북구 율동택지로26번길 6-10 1층57.80㎡ 2층57.80㎡ 제외의 배란다등8.5㎡ [가.일반택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북구로부터이행금지금부과사실있음.나. 건물일부인접지상[283-22]철거소재로보임.다. 현재공실.라. 1층공부상사무실이나현황주최	사무실,주	125,105,100	일괄매각,제외의
		북구 율동동 283-52 88㎡	대	125,105,100	각물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65829	1	사동면거지:광산구 오선동 571 등록번호:27소3479 차명:벤츠 GL450 4Matic 연식:2011.8.12. [희] 10:00	자동차	90,000,000 90,000,000	보관:광산구상안길314-16(하수연컨테이너).2021타경66778(중복)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① 농지법상 농지특정지역을 제외하여 하는 최고거래가격이 1억(10바이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유동성 또는 현금 준비금이나 지급보충금에 의해 보증된 채권(일부 보증서)을 준비하여 합니다.
- ②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을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서류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서류를 최고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서류가 아닌 이상은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거래가격을 실시합니다.
- ④ 최고거래가격과 차순위매수신청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 6. 매각처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과일때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매각허가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출원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기한 유효하며, 매각허가일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사항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기입사항을 명세서에 등록하고 지상권과 지상권유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서(사서)를 첨부하고, 국민주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합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허가 또는 최고거래가격을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특정사항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청약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허가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방으로 발송(신청)하고에 의하여 청약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과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법에 나열된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서류를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할 것을 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는 농지특정지역명칭이 오기되는 최고거래가격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과일까지 농지특정지역명칭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특정지역명칭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허가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허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원심의 매각결정에 불응하여, 속행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회적인 계산과 의 고고나 법원에 반대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 없으나, 이의는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후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 신청이나 불고, 대법원(신청인)은 열람상의 불구로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열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결과 열람을 하고, 매각결과명세서 등 열람을 신청하신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2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신호